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목 차

< 일 반 회 계 >

- 총무과 3
- 기술개발국 15
- 농촌지원국 25
- 연구소·관리소 67



총 무 과

총 무 과

1. 대민활동비
2. 노후 재난안전 CCTV 교체 공사
3. 기타직 보수(실무수습)
4.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책사업	선진농업기술개발보급지원
	단위사업	쾌적한근무환경조성
	세부사업	농업진흥활동
	통 계 목	대민활동비(204-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기술원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 1. 1. ~ 12. 31.
- 예 산 액 : **92,400천원(도비 2,400 중)**
 - ※ 증감 사유 : 상반기 실무수습 8명의 시보발령(6월 중)에 따른 추가 소요액 계상
- 사 업 량 : 15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대민활동비 지급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대민활동비 지급 : 92,400천원 ○ 150명 × 50,000원 × 12개월 = 90,000,000원 ○ 8명(실무수습) × 50,000원 × 6개월(7월~12월) = 2,4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2,400	0	90,000	92,400	2,400	0	
국 비	0				0		
도 비	92,400		90,000	92,400	2,4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8,200	90,342	7,857	9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경리팀	김성균 (행) 6010	이진호 (행) 6021	이재경 (행) 6023

노후 재난안전 CCTV 교체공사	정책사업	선진농업기술개발보급지원
	단위사업	쾌적한근무환경조성
	세부사업	청사시설기능강화및보수
	통계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사보안 및 시설물·연구작물 안전관리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0. 6. 1. ~ 2020. 9. 30.(단년도 신규사업)
- 예산액 : **150,000천원(도비 150,000)**
- 사업량 : 영상감시장치(CCTV)시스템1식(옥내감시카메라 15대, 옥외감시카메라 25대, 영상녹화장치 3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기존 영상감시장치 노후(2009년 설치) 및 저 화질(41만 화소)로, 최신설비(200만 화소이상)로 기존 카메라(15대) 교체 및 신축건물(친환경농업센터) 등에 신규 카메라(25대) 보완 설치하여 청사보안 및 시설물 안전관리 도모
- 지원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산출 근거
- (단위 : 천원)
- | 구분 |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 산출 기초 | <div> <div> <div>■ 재난안전 CCTV 교체보완 : 150,000천원</div> <div> <div>○ 옥내감시카메라</div> <div>· 1,500,000원 × 15개 = 22,500천원</div> </div> <div> <div>○ 옥외감시카메라</div> <div>· 2,000,000원 × 25개 = 50,000천원</div> </div> <div> <div>○ NVR(영상녹화장치 16ch)</div> <div>· 5,000,000 × 3개 = 15,000천원</div> </div> <div> <div>○ 네트워크스위치(24 port)</div> <div>· 2,000,000 × 3개 = 6,000천원</div> </div> <div> <div>○ 토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26,500천원</div> <div>○ 광케이블 및 UTP케이블 등 부자재 : 30,000천원</div> </div> </div> </div> | |
- ### □ 예산 총괄표
- (단위 : 천원)
- | 구분 | 총사업비 | 기투자 | 2020년 | | | 향후투자 | 비고 |
|-----|---------|-----|---------|---------|---------|------|----|
| | | | 기정예산(A) | 2회추경(B) | 증감(B-A) | | |
| 계 | 150,000 | 0 | 0 | 150,000 | 150,000 | 0 | 신규 |
| 국비 | 0 | | | | 0 | | |
| 도비 | 150,000 | | 0 | 150,000 | 150,000 | | |
| 시군비 | 0 | | | | 0 | | |
| 기타 | 0 | | | | 0 | | |
- * 보조율 : 도비 100%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 | 연도 | 예산현액(A) | 집행액(B) | 집행잔액(C=A-B) | 집행률(D=B/A) | 다음연도 이월액 | 비고 |
|-------|---------|--------|-------------|------------|----------|----|
| 2019년 | 0 | 0 | 0 | 0%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 중기지방재정계획 | 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 학술용역비사전심사 | 물품정수취득 | 홍보물사전심의 |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 신규행사성보조금심의 |
|------------------|------|----------|-----------|--------|---------|-------------|------------|
| 미반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 2020년(2020~2024) | | | | | | | |
- ### □ 사업 담당자
- | 실국 | 과 | 팀 | 과장 | 팀장 | 주무관 |
|-------|-----|-----|-------------|-------------|-------------|
| 농업기술원 | 총무과 | 총무팀 | 김성균(행) 6010 | 최정엽(행) 6011 | 홍수영(행) 6014 |
- 9 -
- 10 -

기타직 보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통 계 목	기타직 보수(101-02)

□ 사업개요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타직보수(실무수습) : 128,270천원 ○ 상반기 실무수습 발령 8명 - 정액급식비 : 6,894천원 1) 지방농업연구사 3명: 890천원(6개월치)*3명=2,670천원 2) 지방농촌지도사 2명: 890천원(6개월치)*2명=1,780천원 3) 지방농업서기보·지방행정서기보 2명: 890천원(6개월치)*2명=1,780천원 4) 지방행정주사보 1명: 664천원(4개월치)*1명=664천원 - 명절휴가비 : 9,975천원 1) 지방농업연구사 3명: 1,527천원*3명=4,581천원 2) 지방농촌지도사 2명: 1,362천원*2명=2,724천원 3) 지방농업서기보·지방행정서기보 2명: 1,335천원*2명=2,670천원 - 본봉 : 86,923천원 1) 지방농업연구사 3명: 11,944천원(6개월치)*3명=35,832천원 2) 지방농촌지도사 2명: 10,649천원(6개월치)*2명=21,298천원 3) 지방농업서기보·지방행정서기보 2명: 10,440천원(6개월치)*2명=20,880천원 4) 지방행정주사보 1명: 8,913천원(4개월치)*1명=8,913천원 - 가족수당 : 258천원 - 초과근무수당 : 24,220천원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59,683	0	531,413	659,683	128,270	0	
국 비	0				0		
도 비	659,683		531,413	659,683	128,27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68,164	434,030	34,133	93%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업 담당자

직급보조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통 계 목	직급보조비(204-02)

□ 사업개요

☐ 산출 근거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 직급보조비 지급 : 409,120천원 ○ 연봉제 8명(2급 1명/3급 2명/4급 3명/5급 2명) : 40,200천원 = [650천원*1명 + 500천원*2명 + 400천원*3명 + 250천원*2명]*12개월 ○ 일반직 42명(6급 14명/7급 13명/8급 6명/9급 9명) : 78,000천원 = [165천원*14명 + 155천원*13명 + 145천원*6명 + 145천원*9명]*12개월 ○ 연구직 85명(연구관 과장급 3명/연구관 14명/연구사 68명) : 191,040천원 = [400천원*3명 + 250천원*14명 + 165천원*68명]*12개월 ○ 일반임기제 5명(6급 상당 2명/7급 상당 1명/8급 상당 2명) : 11,700천원 = [250천원*2명 + 165천원*1명 + 155천원*2명]*12개월 ○ 지도직 26명(지도관 과장급 4명/지도관 2명/지도사 20명) : 64,800천원 = [400천원*4명 + 250천원*2명 + 165천원*20명]*12개월 ○ 전문경력관 3명(가군 1명/나군 2명) : 6,960천원 = [250천원*1명 + 165천원*2명]*12개월 ○ 청원경찰 1명 : 1,500천원 = 125천원*12개월 ○ 실무수습 8명(농업연구사 3명/농촌지도사 2명/농업 행정사기보 2명/행정주사보 1명) : 14,920천원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9,120	0	403,500	409,120	5,620	0	
국 비	0				0		
도 비	409,120		403,500	409,120	5,62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36,580	396,457	40,122	91%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업 담당자



기 술 개 발 국

기술개발국

1.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작물연구)
2.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
3. 국고보조금 반환금(기술개발국)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작물연구)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통 계 목	인건비(101-04) 재료비(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상작물인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순도 높은 원원종 우량종자 생산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58,635천원(국비 243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벼, 보리, 밀, 콩 4작목 원원종 생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사업 내용 : 주요작물 벼, 보리, 밀, 콩 등 원원종 우수종자 생산 및 보급
-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22조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장,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등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인건비: 46,231천원 ○ 인건비: 36,180천원 - 67,000원×27일×2.5명×8개월=36,180천원 ○ 4대보험 및 처우개선비 등 기타수당 : 10,051천원 · 4대보험 : 3,618천원 · 정가상여금 : 1,333천원 - 200,000원/인×8월/12월×4회×2.5인=1,333천원 · 명절상여금 : 500천원 - 200,000원/인×1회×2.5인=500천원 · 교통비, 급량비: 3,600천원 - 180,000원/월, 인×2.5인×8월=3,600천원 · 생활보전임금 : 1,000천원 - 50,000원×2.5인×8월=1,000천원	
	■ 시험연구비 : 12,404천원(감 243천원) ○ 농자재 및 비료 농약구입 - 농자재(부작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춥대 등) : 9,771천원 - 퇴비 및 비료 : 9,200원×30포=276천원 - 병해충방제 및 제초제 : 23,000원×3종×20병=1,380천원 - 종자소독 및 상토 : 4,600원×2종×50포=460천원 - 일반소모품 : 17,250원×10종×3개=51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8,635	0	58,878	58,635	-243	0	계속
국 비	58,635	0	58,878	58,635	-243		국고
도 비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8,878	58,878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답작팀	이동재 (행) 6040	정종대 (행) 6050	최현구 (행) 6054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	정책사업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여비(201-01) 행사실비지원금(301-09) 인건경상사업부조(307-02)

□ 사업개요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산출 근거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419,000천원 ○ 사무관리비: 6,000천원 · 평가회 참석수당: 3,000천원 · 평가자료 및 전시용 소모품: 3,000천원 ○ 여비: 4,0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1,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408,000천원(감 121,000천원) · 딸기산학연협력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26,000천원 · 인삼산학연협력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75,000천원 · 버섯산학연협력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07,000천원	

□ 예산 총괄표

국고보조금 반환금(기술개발국)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기술개발국)
	세부사업	국고보조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 사업 기간 : 2020. 5.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1,887천원(도비 21,887 중)**
 -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8사업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21,887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21,886,87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작물연구)	639,49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원예연구)	1,265,61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해충연구)	4,954,000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	86,700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6,388,54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마늘주요병해충제어기술개발)	8,426,73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수출 화훼류 마케팅 전략개발 및 실증)	30,600	
지역특화작목개발(생강가공)	95,2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1,887	0	0	21,887	21,887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21,887	0	0	21,887	21,887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이동재 (행) 6040	윤덕상 (행) 6041	안정호 (행) 6044



농촌지원국

농촌지원국

1.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2.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역량강화 사업
3.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지원
4.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지역농업 활력화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시군운영)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시군정착지원금)
7.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8. 농업 신기술 시범
9.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10.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11. 개량 우량염소 농가 시범보급사업
12.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13. 가공기술 표준화
14.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도)
15.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16.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8.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19.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운영비(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
 - 충남 농촌지도자회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위상 제고
 - * 더 행복한 농촌, 생명산업 농업, 하나 된 농촌지도자회
- 사업 위치 : 천안 상록리조트(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 사업 기간 : 2020. 10. 29. ~ 2020. 10.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도비 300,000 중)
 -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시 유보분 반영
- 사 업 량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공식행사) 대회식, 비전실천 퍼포먼스, 환영리셉션, 폐막식, (학술행사) 토론회/심포지엄 (진시홍보) 농특산물, 농업기술 및 정책홍보관, (체험판매) 청년창업상품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개최지원(700,000천원)	
	○ 민간행사보조 : 행사대행용역 590,000천원, 대회추진단 운영 100,000천원	
	○ 행사운영비 : 10,000천원	

구 분	통계목명	사 업 비	세 부 내 역
총 계		700,000	
행사대행역	소 계	590,000	
	시 설 비	132,000	○ 메인무대설치, 몽골텐트, 전시대 등 ○ 이동화장실, 전기설치 등
	운 영 비	458,000	○ 음향, 테이블, 의자, 싱크대 등 ○ 개폐회식·비전퍼포먼스·주차관리·리셉션 등 ○ 행사보험, 전시 주계관 운영 등 ○ 홍보책자, 영상물 제작 등 ○ 아치탑, 홍보기, 애드벌룬·현수막 등
	대 회 추 진 단		
대 회 추 진 단	소 계	100,000	
	운 영 비	100,000	○ 대회 추진단 운영 ○ 운영요원 교육, 각종 물품·운영 지원
농업기술원	소 계	10,000	
	행 사 운 영 비	10,000	○ 충남농업 신기술개발 주제관 운영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	0	400,000	700,000	300,000	0	
국 비	0				0		
도 비	500,000		200,000	500,000	300,000		
시군비	200,000		200,000	200,00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71%, 시군비 2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9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김길환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역량강화 사업(현안)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핵심 리더로 육성 및 전문능력 배양
- 사업 위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 6. 1. ~ 12. 31.(현안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25,000)**
 - ※ 증감 사유 :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 추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기술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격증반)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 ① 도내 농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역량강화 사업(50,000천원) ☐ 50,000천원 × 1개소 × 50% = 2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5,000			25,000	25,000		
시군비	25,000			25,000	2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김길환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 사업 목적 : 청년농업인 품목별 전문그룹 활성화로 경영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위치 : 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31,500천원(도비 31,500) → 총 사업비내 통계목단 예산액 변경**
 - 사무관리비 △9,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9,160 → 행사운영비 18,160
 - ※ 변경사유 : 현장중심 교육으로 확대 전환 추진(최고전문가 농장실습, 연사회, 현장 세미나 등)
- 사 업 량 : 청년농업인 품목그룹 7개회 107명(쌀, 시설원예, 과수, 한우, 낙농, 양돈, 드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현장중심의 청년농업인 품목별 그룹 전문교육
 - 품목별 최고 전문가 현장방문 노하우 습득, 전문경영 기술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청 제18조,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 산출 근거

</

(단위 : 천원)

* 보조율 : 도비 100%

(단위 : 천원,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경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지역농업 활성화(현안)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농업인(4-H) 드론 활용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 실천 확산과 벼 직파단지 확대, 병해충 지역공동방제 및 고령농 지원 등 농업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당진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6. ~ 2020.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36,000천원**
 - ※ 증감 사유 : 청년농업인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건의 사업임
- 사 업 량 : 1개소(당진시 청년농업인4-H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드론 활용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공동작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기술 투입
 - 드론 3대(3D맵, 장애물 회피기능 등), 벼 직파 및 병해충 방제 부착기, 배터리 등 소모품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지원조례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충청남도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지원조례 제6조(보조금 지원)
 - ① 도지사는 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지역농업활성화 : 120,000천원 ○ 공동 작업을 위한 드론(부속품 포함) 구입 - 40,000천원 × 3대 × 30% = 3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0	0	120,000	12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6,000			36,000	36,000		
시군비	48,000			48,000	48,000		
기 타	36,000			36,000	36,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4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시군운영)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시군 선발 및 운영 관리 : 86,000천원(국비) ◦ 12,300,000원×14시군× 50% = 86,000천원 － 대상자 선발 서면 및 면접심사, 선발자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단 운영 등	
총사업비	172,000천원 (국비 86,000천원, 시군비 86,000천원)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2,000	0	142,000	172,000	30,000	0	
국 비	86,000		71,000	86,000	15,000		국고
도 비	0	0			0		
시군비	86,000		71,000	86,000	15,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000	54,280	4,720	92%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업 담당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시군정착지원금)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초기 영농 정착 및 성장 지원
- 사업위치 : 시군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2,897,000천원(국비 153,000 중)**
 - ※ 증액사유 :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20 대상인원 추가배정 144명→175/ 31명 중)
- 사 업 량 : 14개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 지원인원 : 458명(1년차 175명, 2년차 142, 3년차 14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지급(1년차 100만원, 2년차 90, 3년차 80)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2,897,000천원 ◦ 9,000천원/년 × 458명 × 70% = 2,897,000천원 ※ 농식품부 산출근거에 따름 : 1~3년차 개인별 평균 1년 지급액	
총사업비	4,138,570천원 (국비 2,897,000천원, 시군비 1,241,57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138,570	0	3,920,000	4,138,570	218,570	0	
국 비	2,897,000		2,744,000	2,897,000	153,000		국고
도 비	0	0			0		
시군비	1,241,570		1,176,000	1,241,570	65,57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23,000	1,761,330	61,670	97%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경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 사업위치 : 당진시, 부여군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350,000천원(국비 150,000 중)**
 - ※ 증액사유 :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20년 배정 8개소 → 9/ 1개소 중)
- 사 업 량 : 9개소(개소당 : 스마트 온실 2,000㎡신축, 기자재 구입 등)/ 당진 8개소, 부여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및 부여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하우스를 구축하여 청년농업인(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임대 영농실습장으로 활용
 - 하우스(온실) 시설 신축 및 개보수(개소당 2,000㎡ 이상), 자동화 시설 및 운용비 등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1,350,000천원 ◦ 국비 : 300,000천원 × 9개소 × 50% = 1,350,000천원	
총사업비	2,700,000천원 (국비 1,350,000천원, 지방비 1,3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700,000	0	2,400,000	2,700,000	300,000	0	
국 비	1,350,000		1,200,000	1,350,000	15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1,350,000		1,200,000	1,350,000	1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농업 신기술 시범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세부사업	고품질식량작물생산보급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 목적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화 작목 시범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농가소득 기반 구축 및 농촌 활력화 도모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3,896,000천원(국비 35,000천원 감)**
 - ※ 증감 사유 : 사업1종 타도 전배조치에 의한 조정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확정
- 사 업 량 : 69종 8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식량산업, 원예특작, 축산, 기초기반 등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 신기술 시범 추진
- 지원근거 : 농촌진흥청 제2조 및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헌원, 라. 농업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5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 신기술 시범 ○ 7,792,000원 × 50/100 = 3,896,000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792,000	0	7,862,000	7,792,000	△70,000	0	
국 비	3,896,000		3,931,000	3,896,000	△35,000		국비
도 비	0				0		
시군비	3,896,000		3,931,000	3,896,000	△35,000		
기 타	0				0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3,855,500	3,771,846	83,654	97.8%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19년 (2020~2024)	-	-	-	-	-	-	-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한익수 (행) 6160	이홍복 (행) 6161	이상범 (행) 6162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ICT기술을 활용한 품목별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스마트온실 구축으로 농업인 및 지도공무원 역량 배양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206,000천원(국비 50,000 감)**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경정
- 사 업 량 : 1개 사업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 사업 내용 : 온실 설치 및 개보수, 환경제어 시스템(재배환경 측정 센서, 제이기 등) 구축, 모니터링 장비, 빅데이터 수집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청 제2조 및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 라. 농업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방,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5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 206,000천원 · 206,000천원/개소×2개소×50/100=20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2,000	0	512,000	412,000	△100,000	0	
국 비	206,000		256,000	206,000	△50,000		
도 비	0				0		
시군비	206,000		256,000	206,000	△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6,000	203,328	2,672	98.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	한익수 (행) 6160	김시환 (행) 6171	양현민 (행) 6173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 산출 근거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 50,000천원 · 50,000천원/개소×2개소×50/100=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국 비	50,000			50,000	50,000		
도 비	0				0		
시군비	50,000			50,000	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단위 : 천원,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융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총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개량 우량염소 농가 시범보급사업(현안)	정책사업	충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개량 우량염소 농가 시범보급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개량종 염소품종 도입육성지원으로 염소 사육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0. 6.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7,000천원**(도비27,000천원)
 - ※ 증감 사유 : 축산농가 우수 개량종 육성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건의 사업임
- 사 업 량 : 1종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염소 품종 개량, 울타리 개선, 포획틀 지원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5조

농촌진흥법 제25조

-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개량 우량염소 농가 시범보급사업 ○ 90,000천원×1개소×30/100=2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000	0	0	90,000	9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7,000			27,000	27,000		
시군비	36,000			36,000	36,000		
기 타	27,000			27,000	27,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4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한익수 (행) 6160	김시환 (행) 6171	이중희 (행) 6172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지원
	세부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통 계 목	지치단체경상부조(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산물 가공기술 균일화·표준화로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가공기술지원으로 농가 창업제품의 경쟁력을 식품기업수준까지 향상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국비 40,000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경정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가공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 기술정립과 전통 식품자원 발굴 표준 레시피 사업화, 시제품 개발·생산·소비자 반응 조사 활동 등
- 지원근거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 0천원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 40,000천원×2개소×50% =40,000천원 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80,000	0	△80,000		
국 비	40,000		40,000	0	△4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40,000		40,000	0	△4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자원활용팀	김길환 (행) 6180	서동철 (행) 6191	정고운 (행) 6192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지원
세부사업	가공기술 표준화
통 계 목	지체단체경상보조(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산물 가공기술 균일화·표준화로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가공기술지원으로 농가 창업제품의 경쟁력을 식품기업수준까지 향상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국비 40,000 중)**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변경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가공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 기술정립과 전통 식품자원 발굴 표준 레시피 사업화, 시제품 개발·생산·소비자 반응 조사 활동 등
- 지원근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가공기술 표준화 : 40,000천원 ○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 40,000천원×2개소×50% =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80,000	80,000		
국 비	40,000		0	40,000	4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40,000		0	40,000	4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농촌지원과	자원활용팀	김길환 (행) 6180	서동철 (행) 6191	정고운 (행) 6192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도)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세부사업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통 계 목	기타보상금(301-12) 재료비(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기계 보급확대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9,800천원(국비 14,900 도비 14,900) → 통계목 변경
 - 기타보상금 기정액 29,800→3,120(△26,680천원), 재료비 기정액 2,100→28,780(26,680천원)
 - ※ 농업기술원 종합감사(2019. 10. 7 ~ 18) 결과 조치(통계목 변경 : 기타보상금 → 재료비)
- 사 업 량 : 2과정 170명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농업기계 신규구입자,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영농4-H 회원 등 대상
 - 도로 주행형 농업기계 보유농가 안전기술 및 취급조작교육
 - (농업기계기술인력양성, 여성친화형농업기계,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교육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5조, 제19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12조의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충남 농촌지도 비전 2030」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③ 사·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기계기술인력 교육 수리공구(206-01) : 26,680천원(국비 50%, 도비 50) - 농업기계기술인력양성 교육 : 225천원×90명 = 20,250천원 - 여성친화형농업기계 교육 : 80.3천원×80명 = 6,430천원	직접사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9,800	0	29,800	29,800	0	0	
국 비	14,900		14,900	14,900	0		
도 비	14,900		14,900	14,900	0		
시군비					0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9,800	26,367	3,433	88.4%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농산업기계팀	임민호 (행) 6200	이은우 (행) 6208	장순우 (행) 6210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통 계 목	지방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14개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6,000천원(국비 90,000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경정
- 사 업 량 : 1종 1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또는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시행
- 사업 내용 : 귀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선도농가 멘터-멘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216,000천원 ○ 6,000천원 * 72명(14시군) * 50%= 21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32,000	0	612,000	432,000	△180,000	0	
국 비	216,000		306,000	216,000	△90,000		국고
도 비					0		
시군비	216,000		306,000	216,000	△90,000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0,000	198,090	11,910	94.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임민호 (행) 6200	주성철 (행) 6212	강환용 (행) 6213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신규농업인 중심 품목별 영농기초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10개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000천원(국비 90,000 중)**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 결정
- 사 업 량 : 1종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또는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시행
- 사업 내용 : 신규 귀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 90,000천원 ○ 500천원 * 360명(10시군) * 50%= 9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8,000	0	0	180,000	180,000	0	
국 비	90,000			90,000	90,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90,000			90,000	90,000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6,300	88,043	8,257	91.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임민호 (행) 6200	주성철 (행) 6212	강환용 (행) 6213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통 계 목	지역단체경상보조금 (309-01)

- 사업 목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시군별 귀농 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59,000천원(국비 90,000 중, 도비 13,500 감)**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9개소 (1주기 아산, 2주기 공주, 논산, 태안, 부여, 3주기 서천, 청양, 홍성, 4주기 금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도시민과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추진기구 운영비) 인건비 등 도시민 농촌유치활동동전담기구 소요 경비
 - (하드웨어 구축비) 귀농귀촌 기반조성/ 임시 거주공간 마련/ 리모델링 등
 - (소프트웨어 사업비) 유관기관과 연계한 행사·교육 등 운영경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308-01) : 1,320,000천원 ○ (1주기) 180,000천원 * 1개소 = 180,000천원 ○ (2주기) 160,000천원 * 3개소 = 480,000천원 200,000천원 * 1개소 = 200,000천원 (※2018년이전 공모 선정사업까지) ○ (3주기) 120,000천원 * 3개소 = 360,000천원 ○ (4주기) 100,000천원 * 1개소 = 100,000천원	
총사업비	1,320,000천원(국비 660,000, 도비 99,000, 시군비 561,000)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20,000	0	1,167,000	1,320,000	153,000	0	
국 비	660,000		570,000	660,000	90,000		국고
도 비	99,000		112,500	99,000	△13,500		
시군비	561,000		484,500	561,000	76,500		
기 타	0				0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39,500	839,500	0	100%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융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임민호 (행) 6200	주성철 (행) 6212	강환용 (행) 6213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통 계 목	지자체행정정보시스템 (308-01)

□ 사업개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제7조(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마을단위 찾아가는 응화교육(308-01) : 28,970원 ○ 28,970천원 * 2개소(44회) = 28,970천원	
총사업비	28,970천원(국비 14,485, 시군비 14,485)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970			28,970	28,970		
국 비	14,485			14,485	14,485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14,485			14,485	14,485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	1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업 담당자

국고보조금 반환금(농촌지원국)	정책사업	재우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분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18~2019년
- 예 산 액 : **15,000천원(도비 15,000)**
 -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1개소(농업기술원)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 사업 내용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분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 15,000천원(총사업비 15,000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 원>		
	사 업 명	반납원금	
	계	14,999,190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197,400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320	
	농가경영개선지원	847,370	
	농업전문인력양성	1,200,700	
	농산물소득조사분석	5,229,670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2,218,570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1,869,160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1,05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434,9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0	0	15,000	15,000	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15,000	0	0	15,000	15,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65,340	65,34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기획홍보팀	김길환 (행) 6130	구동관 (행) 6131	신창호 (행) 6134



연구소·관리소

연구소·관리소

1. 국고보조금 반환금(과채연구소)
2. 국고보조금 반환금(화훼연구소)
3. 국고보조금 반환금(양념채소연구소)
4.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
화(인삼약초연구소)
5. 국고보조금 반환금(인삼약초연구소)
6.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구기자연구소)
7. 국고보조금 반환금(구기자연구소)
8.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종자관리소)
9.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논산분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채연구소)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과채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반환
	통계목	802-01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중앙공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31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30,72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토마토·수박 재배 연구)	30,720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 납 금
계	30,72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토마토·수박 재배 연구)	30,720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1	0	0	31	31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31	0	0	31	31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업 담당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양념채소연구소)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양념채소연구소)
	세부사업	국 고 보 조 반 환 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중앙공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444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table> <tr> <th data-bbox="244 1153 745 1176">사 업 명</th><th data-bbox="745 1153 893 1176">반납금</th></tr> <tr> <td data-bbox="244 1176 745 1192">계</td><td data-bbox="745 1176 893 1192">443,950</td></tr> <tr> <td data-bbox="244 1192 745 1209">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td><td data-bbox="745 1192 893 1209">2,070</td></tr> <tr> <td data-bbox="244 1209 745 1225">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한지형 마늘 종구생산 보급)</td><td data-bbox="745 1209 893 1225">314,590</td></tr> <tr> <td data-bbox="244 1225 745 1243">지역농업연구기관고도화 (마늘 우량종묘센터 시설 보완)</td><td data-bbox="745 1225 893 1243">9,500</td></tr> <tr> <td data-bbox="244 1243 745 1260">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생강고품질 재배기술)</td><td data-bbox="745 1243 893 1260">117,790</td></tr> </table>	사 업 명	반납금	계	443,950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2,07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한지형 마늘 종구생산 보급)	314,590	지역농업연구기관고도화 (마늘 우량종묘센터 시설 보완)	9,50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생강고품질 재배기술)	117,790	
	사 업 명	반납금												
	계	443,950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2,07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한지형 마늘 종구생산 보급)	314,590												
	지역농업연구기관고도화 (마늘 우량종묘센터 시설 보완)	9,50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생강고품질 재배기술)	117,790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443,950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2,07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한지형 마늘 종구생산 보급)	314,590
지역농업연구기관고도화 (마늘 우량종묘센터 시설 보완)	9,50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생강고품질 재배기술)	117,790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44	0	0	444	444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444	0	0	444	444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업 담당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삼약초연구소)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인삼약초연구소)
	세부사업	국 고 보 조 반 환 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산출 근거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874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업명	반납금
	계	873,890
	지역농업연구기관고도화(지역연구기관 조성)(인삼)	623,65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인삼 논 직파재배 안정 생산기술 개발)	250,240

□ 예산 총괄표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74	0	0	874	874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874	0	0	874	874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단위 : 천원,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업 담당자

지 역농업 연구기 반고도 화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 시설)	정책사업	일등품질 구기자 품종육성·생산기술연구
	단위사업	경쟁력있는 구기자 산업 육성
	세부사업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구기자)
	통 계 목	시설비(401-01),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류 피해 예방으로 신품종 육성 등 정밀한 시험연구사업 추진
 - 노지포장 병해충 자동방제로 정밀방제 추진 및 방제노력 절감
 - ※ 수확기(7월~11월)의 조류 피해가 심하여 열매특성 및 수량성 조사 등 시험연구사업에 심각한 영향 초래
 - ※ 노지포장의 병해충 방제에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정밀 방제가 어려우며 농약안전사고의 위험 내재
- 사업 위치 : 구기자연구소(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131,348천원(국비 4,326, 도비 4,326 감)**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2,000m²(노지포장 방조망 시설 1식, 자동방제시설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구기자연구소
- 사업 내용
 - 노지포장 방조망 시설, 노지포장 자동방제 시설, 관배수 시설
- 지원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의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구기자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 시설 : 131,348천원 ○ 시설비 : 130,348천원(감 8,652천원) · 노지포장 방조망 시설 : 28,000원 × 2,000m² = 56,000천원 · 노지포장 자동방제 시설 : 35,000원 × 2,000m² ≒ 70,348천원 · 자동 관수 시설 : 4,000천원 ○ 시설부대비 :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1,348		140,000	131,348	△8,652		계속
국 비	65,674		70,000	65,674	△4,326		균특
도 비	65,674		70,000	65,674	△4,326		도비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장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구기자팀	주정일 (행) 6380	이보희 (행) 6386	손승완 (행) 6388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종자관리소)	정책사업	우량종자생산기술 연구활동지원
	단위사업	우량종자생산및연구
	세부사업	원원종 및원종생산비 지원(본소)
	통 계 목	인건비, 여비, 재료비 (101-04, 202.01,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보급종 생산을 위한 식량작물(맥류, 콩) 원종 생산
- 사업 위치 : 종자관리소(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13,585천원(국비 44,942)**
 - * 증감 사유 : 맥류 원종 생산면적 감소 등에 따른 교부금 확정
- 사 업 량 : 맥류 7.2ha(72,000m²), 두류 6.0ha(60,000m²)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 사업 내용 : 식량작물(맥류, 콩) 원종 생산
-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9조 1항

종자산업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 및 모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총사업비 : 213,585천원(국비 213,585)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189,032천원 ◦ 기본급 : 68,720원×23일×8개월×9명=113,800천원 ◦ 주휴수당 68,720×40일×9명=24,739천원 ◦ 연차수당 68,720×5일×9명=3,092천원 ◦ 초과근무 103,080×10일×9명=9,277천원 ◦ 특수작업(기계, 농약 등)수당 5,000×30회×9명=1,350천원 ◦ 교통비, 식비 180,000×8개월×9명=12,960천원 ◦ 상여금, 명절휴가비 750×9명=6,750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37,000×8개월×9명=2,664천원 ◦ 4대보험기간부담금 200,000×8개월×9명=14,400천원 ■ 국내여비 : 7,200천원 ◦ 종자생산 추진활동 여비 : 6명×100,000원/월×12월 = 7,200천원 ■ 재료비 : 17,353천원 ◦ 퇴비 : 1,000개 (20kg) × 6 = 6,000천원 ◦ 복비 : 200개 (20kg) × 10 = 2,000천원 ◦ 농약 : 마세트 유제 등 = 7,000천원 ◦ 기타 농자재(P,P포대, 피복비닐, 낫 등) = 2,35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추경예산액(B)	증감(B-A)		
계	213,585	-	258,527	213,585	-44,942	-	계속
국 비	213,585	-	258,527	213,585	-44,942	-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258,527	258,527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전작팀	이종호 (행) 6270	이승수 (행) 6281	-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논산분소)	정책사업	우량종자생산기술연구활동지원
	단위사업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세부사업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논산분소)
	통 계 목	인건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국내여비,재료비 (101-04) (201-01) (201-02) (202-01)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순도 높은 벼 원종 생산 공급으로 원활한 우량종자 생산에 기여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논산시 부석면 마구평1길 20-26)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
- 예 산 액 : 285,408천원(국비 48,153 중)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벼 원종 생산포장 15ha(6품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 사업 내용 :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분담관리, 인건비 등 우량종자 생산 사업
- 지원 근거 : 종자산업법 22조(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장, 특별·광역시·도지사, 시장·군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등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원종 수도종자 생산 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78,281천원 ○ 기본급 : 69천원×21일×8개월×9명 = 104,328천원 ○ 주차 및 월차수당 : 69천원×40일×9명 = 24,840천원 ○ 휴일임금 : 69천원×14일×9명×1.5(휴일임금) = 13,041천원 ○ 정기상여금 : 200천원×2회×9명 = 3,600천원 ○ 명절휴가비 : 200천원×9명 = 1,800천원 ○ 수당 : 12,960천원 - 교통보조비 : 50천원×8개월×9명 = 3,600천원 - 급량비 : 130천원×8개월×9명 = 9,360천원 ○ 4대보험 : 246천원×8개월×9명 = 17,712천원 ■ 수도종자생산장비 임차료(사무관리비) : 16,910천원 ○ 임차료 : 45,900평×40원×4회 = 7,344천원 *무인항공(드론) ○ 약제대 : 2,391.5천원×4회 = 9,566천원 ■ 농기계 유류구입 및 농기계 수리(공공운영비) : 28,000천원 ○ 농기계 유류구입 : 14,000천원 ○ 농기계 수리 : 14,000천원 ■ 종자생산 추진활동(국내여비) : 8,050천원 ○ 종자생산 추진활동 : 1,150천원×7명 = 8,050천원 ■ 수도종자생산(재료비) : 54,167천원 ○ 비료 및 농약 : 43,400천원 · 유기질비료 : 1400포×10천원 = 14,000천원 · 종자소독약 : 140병×10천원 = 1,400천원 · 상토 : 1400포×5천원 = 7,000천원 · 시기별 비료 : 700포×15천원 = 10,500천원 · 시기별 제초제 : 700병×15천원 = 10,500천원 ○ 소 농기구 및 농자재 : 10,767천원 · 장화 및 우의 : 50천원×28개 = 1,400천원 · 톤백 : 15천원×280개 = 4,200천원 · 소농기구 및 소모품 농자재 : 5,16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5,408	0	237,255	285,408	48,153	0	계속
국 비	285,408	0	237,255	285,408	48,153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81,753	281,753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분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벼종자팀	김학현 (행) 6300	김기갑 (행) 6301	황선엽 (행) 6305